마을버스 운전기사의 뇌경색 및 고혈압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한 경우

〈제공 : 근로복지공단〉

서울행정법원 1999. 11. 16. 선고 99구5282
요양불승인

판결이유

1. 처분의 적법 여부

(1) 원고의 근무내용

㈎ 소외 회사 마을버스 노선은 석계역 - 태릉시장 - 동부시장 - 한양예식장을 왕복하는 6km 구간으로 1회 왕복에 걸리는 시간은 정체시에는 약 40분, 평상시에는 약 30분, 새벽에는 약 20분이다.

㈏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 근무는 오전(05:00~13:00) 및 오후(13:00~24:00) 근무로 구분되며, 매주 일요일 근무조를 변경한다. 오전 근무자는 보통 왕복 14~15회를, 오후 근무자는 17~18회를 운행하며, 1회 운영 후 약 5분간 휴식한다. 운전기사들은 근무조와 상관 없이 1주일 중 1일은 정기적으로 휴무를 한다.

㈐ 원고는 1998. 9. 20.(日)부터 오후 근무를 하였는데, 9. 25.(金)은 휴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, 9. 26.(土)은 13:00부터 23:00까지 근무를 하고, 근무 교대일인 9. 27.(日)은 05:15부터 13:15까지 근무를 하였다. 원고는 9. 27. 오전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기 위해 잠을 약 2~3시간밖에 자지 못하였다.

(2) 원고의 병력 및 생활습관

원고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, 술도 잘 마시지 않았다.

(3) 원고의 상병에 관하여

뇌경색(뇌졸증)은 일반적으로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, 흡연, 심장병, 혈관이상 및 혈액 이상 등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, 과도한 격무나 과중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켜 뇌혈관에 이상을 미침으로써 뇌경색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, 수면량의 절대부족 및 휴식결핍도 뇌경색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.

2. 판단

원고가 근무시간인 새벽 및 심야를 오가는 근무교대를 1주일 단위로 계속함으로써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생활을 해 오고 있었던 점, 특히 이 사건 재해 전 날 23:30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날 새벽 05:15부터 근무를 함으로써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, 기타 원고의 근무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하면,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마을버스 운전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축적된 상황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후 적절한 휴식 없이 바로 새벽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.